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99. 10.

의안번호

95

제 출 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건축법(99. 2. 8.) 및 동법 시행령(99. 5. 8.) 개정에 따른 평창군 건축조례개정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는 평창군 건축조례 개정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 건축 조례 전면 개정.
 -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 및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삭제 및 신설

□ 주요골자

1.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규정 삭제

- 법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 조례에서 삭제

2. 가설건축물 조항 삭제 : 시행령에서 세부용도 지정

3. 대지면적 최소한도 삭제

-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을 폐지함으로 짜투리 대지상의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대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분할재산규정 신설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농지지역 200m² 등)

4. 건축업무대행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안 제15조】

- 모든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대행 할수 있도록 규정 끼어 있었으나 금회 법령의 개정으로
- 건축공사 감리 업무대행자 등록 규정 신설 (등록된 자에 한하여 업무대행

(가능토록 규정 신설)

- 설계자 및 감리자가 현장조사 및 검사 가능한 범위 지정

5. 대지안의 조경 기준 완화 【안 제17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 %(기존 15%에서 완화)
-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 %(기존 10%에서 완화)

6. 조경공사비 예탁 규정 삭제

- 조경공사 불가능시기에 건축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조경공사비를 군에 예탁한후 사용검사 처리되었으나 금회 법령 개정으로 사전승인(가사용)처리후 조경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7.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삭제

- 법령에서 명시 : 대지가 도로와의 접하는 길이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연면적 또는 총수에 따라 세분되어 지정 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너비6미터이상의 도로에 4 미터이상 접하도록 명시함으로 조례에서 삭제

8.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 법령에서 삭제 : 도로안에 방범초소,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등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금회법령에서 삭제

9. 지역지구안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 전면 개정 【안 제19조~제31조】

- 법령상에서 용도분류(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지역,지구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전면 개정 및 확대 지정

10. 풍치지구안에서의 건축 금지 용도 제분류 【안 제32조】

- 건축물의 용도 제분류로 건축금지 용도 제분류

11. 풍치지구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

- 건축법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로 조례에서 삭제

12. 풍치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삭제

- 건축법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로 조례에서 삭제

13. 학교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 제한 규정 삭제

- 법령에서 삭제

14. 미관지구내의 건축 조항 삭제

- 법령에서 미관지구 삭제 : 세부 건축기준 삭제로 불필요한규제 완화 및 건축위원회심의 규정 삭제로 처리기간 단축

15.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신설 【안 제41조】

-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로 대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분할 최소면적 지정으로 소규모 대지 분할 금지규정 신설 (주거지역 60㎡ 상업 지역 150㎡, 녹지지역 200㎡ 등)

16.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거리 삭제(완화)

- 법령에서 세부기준 명시

17.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 삭제

- 법령에서 세부기준 명시

18.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통로 및 맞벽 규정 신설 【안 제42조】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연결 통로 설치 가능
- 인근 건축물 간의 맞벽 건축 허용

19.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구역 지정 규정 삭제

- 법령에서 삭제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99. 7월중 입법예고 완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조례 제 호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영 평창군건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

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교통·조경·환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기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 각호와 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그려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 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도로교통 및 미관에 저해하지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법 제15조 제1항의 가설 건축물.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다.

③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업무를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을 하게하는 경우 대행할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 중 업무 대행자로 본군에 등록된 건축사로 하며, 등록 신청은 군수가 지정 공고한 기간내에 신청할수 있다. 다만, 설계자 및 감리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허가 및 사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을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의 2(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단독주택과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별 대지안의 조경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
2. 연면적 2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수 있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정비학원을 제외한다.) 및 도매시장,소매시장안의 건축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 는 밀 도 (제곱미터당)	상복수의 비율 (퍼센트)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복수 : 50 낙엽수 :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 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4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③ 기존 수목(원시림)을 배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여야 하는 면적의 1배까지 조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7. 7. 11 개정)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9조(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4.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폭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제20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지업·봉제(의류편조

업을 포함한다) · 필름현상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두부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 · 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진소 및 고압가스충진소 · 저장소에 한한다.

11.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세차장 · 매매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1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라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2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3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 한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8.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4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리목 내지 아목의 시설에 한한다)

제25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나 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 한다)
8.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마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6조(전용공업지역에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나목의 직업훈련소(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나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내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마목 내지 아목에 한한다)

제27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복 및 그 복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8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9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복 및 마복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및 아복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
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균란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나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나목의 직업훈련소
6.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9.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접회사설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2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개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동호나목 내지 라목을 제외한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5호의 문회 및 집회시설(가복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영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6. 영 별표1 제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호나복 및 라복에 한한다)
7.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8.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9.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나목을 제외한다)
10.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1. 영 별표1 제13호의 공장
12.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영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을 제외한다)
16.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7.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8.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제36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초소동 소규모 시설에 한함)
4. 영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영 제15조제4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

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영 별표1 제1호의 난독주택
3. 영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단,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영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나복
6.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나복 및 나목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바복 및 사복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동호가복 · 나복 · 라복 및 마복에 한한다)
4.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및 건축물의 구조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37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및 제2종 재해 위험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거 재해로부터 안전할수 있다고 확인된 구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및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7장 건폐율·용적율 등

제38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 영 제78조제4항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2.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제39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을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비율이 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사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400퍼센트.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은 110 퍼센트, 그외 지역은 100 퍼센트.

제40조(용적율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4을 가산한 비율
- ② 영 제79조제5항 각호의 지구,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강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

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용적율을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1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제41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은 다음 각호의1의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 제곱미터

제42조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상세지구로서 주된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3. 평창군 건축 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장 건축물의 높이

제43조(2이상의 도로등에 접한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면도로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영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디족 경계선까지 1.8

배로 한다.

제4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조동향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2. 영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건축 하여야 한다.
3. 영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 가. 정남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 나. 채광창 (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제4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면적을 포함할수 있다.)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진의자, 파고라, 시계탑, 분수대, 조형물 등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와화는 기준용적율의 1.2배

이하, 기준 높이 제한의 1.2배 이하로 한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46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 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에게 등록한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역,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작은 하자를 야기 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이내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10장 보 칙

제47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위락시설

4. 소각시설

5. 운반시설 : 캔베이어벨트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제1항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 법 제45조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 영 별표 1 제13호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
3. 제1항 제4호 : 영 별표1 제12호
4. 제1항 제5호 : 영 별표 제 1 제18호

③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기 조화설비, 냉각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영 제121조 제1항 관련 제15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위반은 100분의 3
2.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2

제4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6조의2 제1항에 의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의 2(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3(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의 4(자료제출의 요구) 조정위원회의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5(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6(수당) 조정위원회의 수당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7(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비밀준수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 8(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서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시행규칙) 법 · 영 · 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9.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 표 1 】

건축허가수수료(제14조 관련)

면적	금액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천원	단독주택 1천 500원
	기타 7천원	기타 3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500원	단독주택 2천원
	기타 1만 5천원	기타 8천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만원	1만5천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만5천원	4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만원	7만5천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120만원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